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장

□ 모집개요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5층
- 선정규모 : 0개사
- 모집공간 : 개별 창업보육실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6. 8. 13(목) 17:00까지
- 입주자격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및 창업기업확인서 둘 다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 입주가능 업종 : 제조업(비제조업 입주가능 업종 별표3 참조)

- 신청자격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승계, 기업의 형태의 변경, 폐업후 사업재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 참조)

□ 선정 기준

- 창업자 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 평가 절차

- 1차 : 서류심사
 - ※ 서류전형 통과 여부는 개별 통지
- 2차 : 발표심사
 - 서류전형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심사
 - 프리젠테이션 (5분 내외) 및 질의 · 응답(5분 내외)

□ 입주공간 및 입주조건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경영평가 후 최대 5년 이내 입주가능)
- 입주공간 : 약 28~30m²(전용면적)
- 입주호실 및 입주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임대면적(m ²)	전용면적(m ²)	보증금	관리비	비 고
개별	약40~50 (12~15py)	약28~30 (8~10py)	1,500,000	월 약 280,000~ 350,000	- 부가세 별도 - 임대면적 기준 계약 - 20,000원/평 - 사무형 공간 - 무료주차 1대 - 전기, 수도, 공용관리비 포함

- * 센터 사정에 따라 임대 공간 변경 가능
- * 졸업 혹은 퇴거시 보증금 반환
- * 공과금 과다발생시 관리비 산정방법 변경할 수 있음

□ 입주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등
- 경영애로지원 전문 컨설팅_경영, 판로, 수출 등 상시 상담
- 회의실, 포토스튜디오 제공
- 건물 내 무료 주차 지원 (기업당 1대)

□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8. 13(목) 17:00까지

- 서류 및 발표심사 후 합격자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최근 2개년)
- 대표자 개인신용평가서 1부(신용등급/점수 기입_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
-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매출증빙서류 등)
- 여성기업확인서 1부(기창업자)
- 창업기업확인서 1부(기창업자)
- 총 사업자등록내역 증명원(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예비창업자)

- 추가 제출서류

- 전년도 재무제표 각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 자료)

※ 제출 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됨(누락 시 부적격 처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및 문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이메일 접수(접수마감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날인된 서류를 전자우편 gwkim@wbiz.or.kr으로 제출*

* 수신확인을 위해 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032-822-9622) 필수

○ 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 전화 032-822-9622

붙임 [별표 1] 창업여부 기준표

[별표 2]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별표 3] 비제조업 입주가능 업종(지식·정보통신산업)

[별표 4] 인천센터 도면

[별표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산업표준 분류	업종	비고
금융 및 보험업	K64~66	금융관련 업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부동산업	L68~69	부동산 임대, 중개, 장비 및 기계 임대, 음반 및 비디오 등 임대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J55~56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기타 캐블링 및 베틱업	9124	기타 캐블링 및 베틱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이용 및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미용관련 서비스업 세탁 및 장례, 예식관련 서비스업 및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 등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산업표준 분류 >	
▪ 55	숙박업(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일반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64	금융업(은행 및 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68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69	임대업;부동산 제외(운송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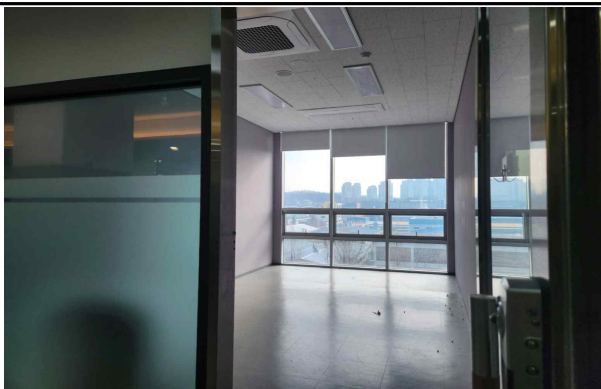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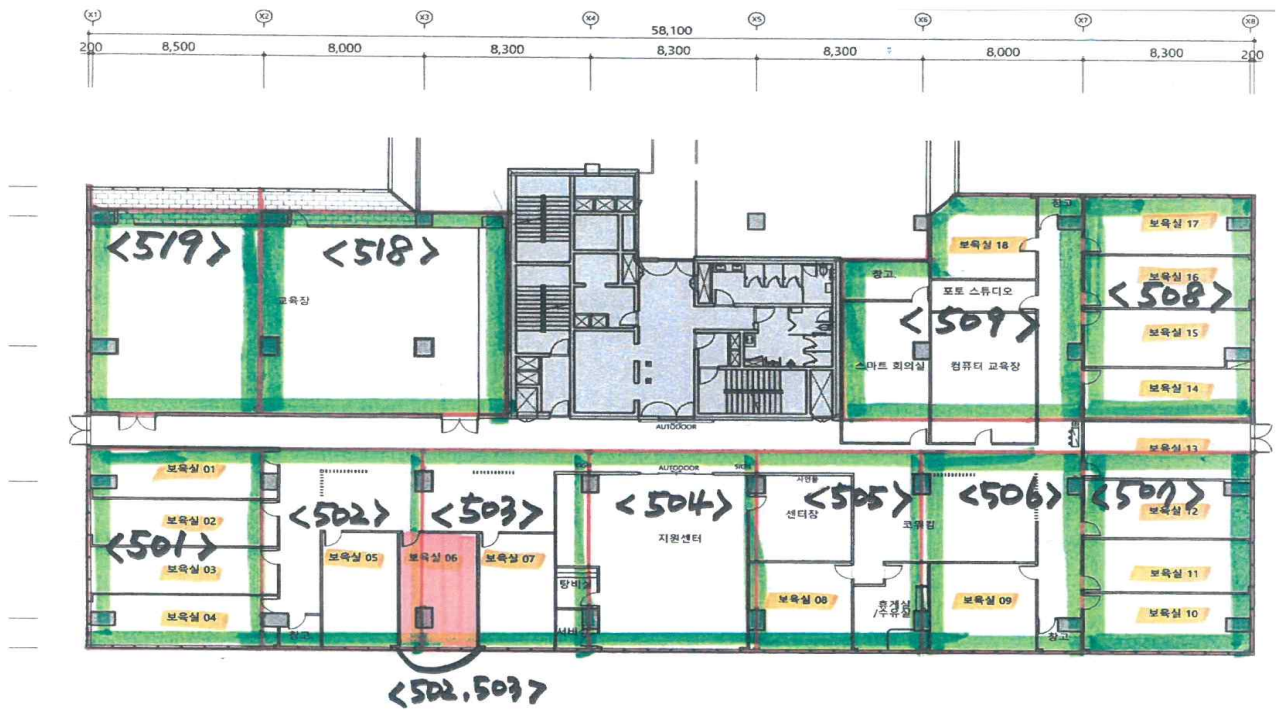
비제조업 입주가능 업종(지식·정보통신산업)

구 분	각 호	업종명	표준 산업 분류 번호	세부입주가능업종
지식 산업	1 2 3	연구개발업	70	-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2.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 개발업 -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지식 산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72921. 측량업 - 72922. 제도업 -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 72924. 지도 제작업
지식 산업	5	광고물 작성업	71393	-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지식 산업	6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3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지식 산업	7	출판업	58	-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 58112. 만화 출판업 -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 58121. 신문 발행업 -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지식 산업	8	전문디자인업	732	-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 73202. 제품 디자인업 - 73203. 시각 디자인업 -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지식 산업	9	포장 및 충전업	75994	- 75994. 포장 및 충전업
지식 산업	10	교육 서비스업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등(세부내용 법률참조)
지식 산업	11	경영컨설팅업	71531	- 71531. 경영컨설팅업
지식 산업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2	-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지식 산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지식 산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지식 산업	1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 59120.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지식 산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지식 산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지식 산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지식 산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지식 산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764	- 76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 산업	21	광고대행업	7131	- 71310. 광고 대행업
지식 산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지식 산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	-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지식 산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지식 산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지식 산업	26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	- 7호(출판업), 10호(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법률참조)
지식 산업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표준산업분류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 관이 인정하는 산업
정보 통신 산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정보 통신 산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통신 산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	- 63111. 자료 처리업 -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정보 통신 산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정보 통신 산업	5	전기 통신업	612	- 61210. 유선통신업 -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 61291. 통신 재판매업 -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합 계		총 69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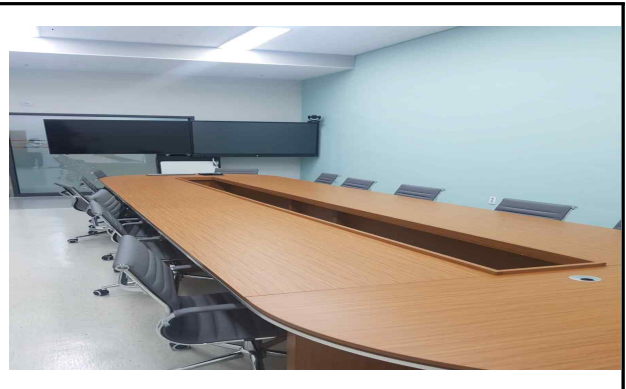
[별표 4]

인천센터 도면



창업보육실(개별실)

※싱크대설치 無, 가구, 사무기기 등 미제공



공용공간(회의실)



센터 전경 (외부)